

미국의 승강기 인증·검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학부

(2017. 4. 10. 접수 / 2017. 4. 18. 수정 / 2017. 4. 20. 채택)

A Current State and an Implication of an Elevator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System in U.S.A.

Young Jin Kim[†]

Department of Law,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pril 10, 2017 / Revised April 18, 2017 / Accepted April 20, 2017)

Abstract : An undeniable reason for elevator accidents is relevant to diverse defects of elevator itself including a fatal flaw in its managing system. In order to prevent and control disastrous accidents,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brand new department,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in 2014. For the field of elevator accidents, MPSS, hoping to take the lead, tries to reform related law and statutes. At this time, it is worthwhile to review foreign country's precedent to find out its applicable lesson. This study specially focuses on introducing U.S. legal system dealing with elevator safety area from the viewpoint of stressing the identity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state, county, city etc. This article mainly reviews these four points: i) a current state of safety code, guide, standard for elevator in U.S.A. ii) an elevator parts certification system under ASME A.17.1, iii) an elevator inspection system in New York City, iv) an implication of an elevator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system in U.S.A. to us.

Key Words : elevator accident, elevator safety code, elevator certification, elevator inspection, ASME A.17 series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승강기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598,489대가 설치, 운행되고 있는데 승강기와 관련한 사고 역시 최초의 통계 현황을 찾을 수 있는 1993년부터 꾸준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안전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¹⁾.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 연 사고건수 1위(154건), 2012년에 연 사고건수 2위(133건)의 승강기사고 발생현황을 보여준 이후 최근에 들어서는 점차 연 사고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사고 발생의 요인을 살펴보면 이용자 과실 이외의 요인, 즉 작업자 과실이나 관리부실, 보수결함, 제조불량 등의 사유에 의한 사고도 계속 발생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²⁾. 이는 여전히 승강기 기기 자체의 결함을 승강기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4년, 온 국민을 비탄에 젖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안전사고의 발

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확보 총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설립하였다. 승강기 관련사고의 방지 및 대처의 분야에도 국민안전처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련 검사 부문을 국민안전처에서 맡아 왔으나 승강기 안전인증 부문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업무가 정부부처 내에서도 이원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따라서 이를 국민안전처 주도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령 개편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16년 7월에는 기존 국민안전처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고용노동부산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조직 개편을 완료하였다.

법제 및 관련 조직의 정비가 진행 중인 현재 우리의 상황에 즈음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분야, 특히 승강기 인증·검사체계에 관해 외국에서는 어떠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지 그 현황 및 시사점을 탐색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면 우리의 제도 개편에 참조할만한 사항들을

[†] Corresponding Author : Young Jin Kim, Tel : +82-32-835-8325, E-mail : youngkim810@inu.ac.kr
Department of Law,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22012, Korea

발굴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각 주, 카운티, 시 별 자치 및 독자성을 중시하고 민간 영역의 기준이 각 행정주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특성의 법제를 연방법과 아울러 운영하고 있는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우리의 관련 제도 정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시각의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미국의 승강기 안전 관련규정의 현황 및 승강기 부품 인증제도의 운용양상을 살펴보고 미국 뉴욕시의 승강기 인증·검사제도 운용 현황을 하나의 사례로 소개한 후 우리의 승강기 관련 법제 및 조직정비 작업에의 시사점을 간단히 도출해보기로 한다.

2. 미국의 승강기 안전 관련규정의 현황

2.1 개요

미국의 법제 정립과정을 고찰해보면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국가의 성립과정에서부터 단일국가와는 본질적 차이를 가지므로 중앙정부가 전국차원에서 단일한 법을 공포하여 시행하는 대륙식의 법전 창설방식과는 본질적으로 친화적일 수 없다. 미국의 경우는 지방 또는 지역 주도의 규범(code, rule, law) 운영을 근간으로 하되 민간 영역의 전문적 기술이 반영되어 제정된 규범(standard, guide)을 포함시키면서 수범자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차원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는 방식에 의해 주로 법제를 정립시켜 왔다³⁾. 따라서 미국의 승강기 안전관련 규정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비영리기관인 국제규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de Council)가 제정한 국제건축법전(IBC, International Building Code)의 최신판인 2015년판 중 Chapter 30에 승강기와 컨베잉 시스템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둘째, 전국화재방재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제정한 각종 규정 및 기준 중 NFPA 70(National Electrical Code, 전국전기규정), Chapter 6, 620에 승강기, 덤웨이터(소형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플랫폼 리프트, 층계 제어리프트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NFPA 101(Life Safty Code, 생명안전규정)도 승강기 안전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셋째,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가 제정한 ASME A.17 규정은 승강기 안전 인증 및 검사 관련 규정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각 주 및 시 정부들은 ASME A.17 규정들을 주로 채택하여 실제 승강기 인증·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본고는 미국의 승강기 인증·검사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하 ASME A.17 규정에 대해 부연하여 서술한다.

2.2 ASME A.17 규정

1880년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는 보일러 압력용기 등의 안전 확보를 통해 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ASME 규격을 제정하면서 아울러 ASME 인증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반 산업분야 및 원자력분야에 활용되는 압력용기 및 자재 등에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한다⁴⁾. ASME 인증은 점차 확대되었고 특히 승강기 안전 관련규정은 ASME A.17 code로 명명되었다. ASME A.17 시리즈는 민간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보완·수정 작업을 한 후 이를 모아서 통상 3년 주기로 정규 개정판이 발행되며-예를 들어 A17.1의 그간의 수정 내역을 종합한 가장 최근 버전은 2016년판-현재 미국표준규격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웹사이트 등에서 유료로 온라인상 판매되고 있다⁵⁾. ASME A.17 규정들의 표제는 아래 Table 1의 내용과 같다.

Table 1. ASME A.17 Series Title

ASME A17.1	Safety Code for Elevators and Escalators
ASME A17.2	Guide for Inspection of Elevators, Escalators, and Moving Walks
ASME A17.3	Safety Code for Existing Elevators and Escalators
ASME A17.4	Guide for Emergency Personnel
ASME A17.5	Elevator and Escalator Electrical Equipment
ASME A17.6	Standard for Elevator Suspension, Compensation, and Governor Systems
ASME A17.7	Performance-based safety code for elevators and escalators

이상의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 ASME A.17 규정은 A.17.1부터 시작하여 A.17.7에 이르기까지 규범의 외연을 확장해서 아주 구체적 태양으로 정립되어 나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설치된 승강기가 아니라 기존 운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경우 기기 노후 상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필요할 수 있겠고 이러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된 안전 규정인 A.17.3을 설치하는 식이다.

한편 ASME 17.1의 Section 8, 일반 요건 항목에는 승강기 관련 각종 검사 및 테스트, 인증에 관한 사항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의 승강기 안전 관련규정의 열개를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Section 8 중 주요한 관련규정들의 표제 및 내용을 추출해보면 아래 Table 2의 내용과 같다.

이상 ASME A.17.1 Section 8 규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미국의 승강기 안전 검사 및 테스트(테스팅)의 내

Table 2. ASME A.17.1 Section 8 Series Title & Contents

Title	Contents
Sec.8.3 Engineering Tests, Type Tests, and Certification	8.3.1 General Requirements for Test and Certification
	8.3.2 Type Tests of Car and Counterweight Oil Buffers
	8.3.3 Type Tests of Interlocks, Combination Mechanical Locks & Electric Contacts, & Door or Gate Electric Contacts
	8.3.4 Entrance Fire Type Tests
	8.3.5 Type Tests for Hydraulic Control Valves
	8.3.6 Escalator Brake Type Test
	8.3.7 Vertical Burn Engineering Test
	8.3.8 Test Method for Evaluating Room Fire Growth Contribution of Textile Wall Covering
	8.3.9 Engineering Tests for Hydraulic Overspeed Valves
	8.3.10 Engineering Tests- Safety Nut & Speed Limiting Devices of Screw-Column Elevators
	8.3.11 Step and Pallet Fatigue Engineering Test
	8.3.12 Suspension-Member Tests
Sec.8.6 Maintenance, Repair, Replacement and Testing	8.6.1 General Requirements
	8.6.2 Repairs
	8.6.3 Replacements
	8.6.4 Maintenance and Testing of Electric Elevators
	8.6.5 Maintenance and Testing of Hydraulic Elevators
	8.6.6 Maintenance and Testing of Elevators with Other Types of Driving Machines
	8.6.7 Maintenance and Testing of Special Application Elevators
	8.6.8 Maintenance and Testing of Escalator and Moving Walks
	8.6.9 Maintenance and Testing of Moving Walks
	8.6.10 Maintenance and Testing of Dumbwaiters and Material Lifts
	8.6.11 Special Provisions
Sec.8.7 Alterations	8.7.1 General Requirements
	8.7.2 Alterations to Electric Elevators
	8.7.3 Alterations to Hydraulic Elevators
	8.7.4 Alterations to Elevators with Other types of Driving Machines
	8.7.5 Alterations to Special Application Elevators
	8.7.6 Alterations to Escalator and Moving Walks
	8.7.7 Alterations to Dumbwaiters and Material Lifts
Sec.8.10 Acceptance Inspections and Tests	8.10.1 General Requirements for Acceptance Inspections and Tests
	8.10.2 Acceptance Inspection and Tests of Electric Elevators
	8.10.3 Acceptance Inspection and Tests of Hydraulic Elevators
	8.10.4 Acceptance Inspection and Tests of Escalator and Moving Walks
	8.10.5 Acceptance Inspection and Tests of Other Equipment
Sec.8.11 Periodic Inspections and Witnessing of Tests	8.11.1 General Requirements for Periodic Inspections and Witnessing of Tests
	8.11.2 Periodic Inspections of Electric Elevators
	8.11.3 Periodic Inspections of Hydraulic Elevators
	8.11.4 Periodic Inspections of Escalators and Moving Walks
	8.11.5 Periodic Inspections of Other Equipment

용은 부품 테스트와 가동 테스트, 검사(인스펙션) 제도까지 함께 운용함으로써 촘촘하게 각 단계별로 승강기 안전 사고의 발생 확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ASME A.17.1 Section 8 규정상의

Table 3. Type analysis of elevator test and inspection under ASME A.17.1. Section 8

Type	Contents
Test	Engineering Test
	Type Test
Testing	Maintenance and Testing
Inspection	Acceptance Inspections
	Periodic Inspections

승강기 안전 검사 및 테스트를 유형별로 분류를 시도해보면 Table 3의 내용과 같다. 우리의 경우 승강기 부품인증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따르게 하고 승강기인증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따르게 하며 각종 검사 및 유지보수·사후관리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ASME A.17.1은 승강기 부품 테스트, 가동 테스트, 승강기 검사(인스펙션)까지 모두 동일 규범 안에 포섭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선택은 규범의 탐색 및 적용을 시도할 때 규정이 산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상당히 절감시키고 있는 방안에 해당한다.

3. 미국의 승강기 부품인증제도

3.1 개요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의 경우는 ASME A.17 규정 시리즈에 따라 승강기 분야의 안전인증기준이 정립되는데 부품 테스트, 가동 테스트, 검사(인스펙션)의 세 영역 중 부품테스트 분야, 즉 엔지니어링 테스트와 유형 테스트에 인증(certification)이란 용어를 부가한다. 이를 우리 식으로 본다면 부품인증제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공산품의 안전성 인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보험업자(협회)연구소)라벨이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므로 승강기 부품 역시 실제 인증과정에서 UL라벨이 부착되어왔다. UL은 본래 1894년 이래 민간영역에서 공산품 및 설비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하여 보험협회가 보험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안전인증규격으로 1903년에 “Tin Clad Fire Doors”의 표제로 첫 번째 안전 기준이 출간되는 등⁶⁾ 민간의 안전인증제도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후 미국 연방노동부 산하 연방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미국 내 사용되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정시험소(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게 되면서 NRTL이 인정하는 다른 여러 민간시험

소들과 더불어 NRTL 리스트에 UL도 편입이 된다⁷⁾. 따라서 UL을 포함하여 NRTL 인증에 따라 제품이 안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경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안전규격은 미국전국표준연구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와 같은 표준규격기관이 승인하는 규격을 사용하게 된다⁸⁾.

3.2 승강기 부품인증 대상

ASME A.17.1의 Section 8.3을 살펴보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품, 즉 인증 대상 또는 품목이 나열되고 있는데 총 11개 영역에서 행해지는 테스트로 볼 수 있겠고 완충기, 인터록(내부잠금장치), 방화문, 유압식 제어밸브, 에스컬레이터 브레이크, 유압식 과속밸브 등의 품목을 대표적인 인증 품목으로 파악할 수 있다. Section 8.3.은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부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에스컬레이터 부품의 인증방식에 따른 구분 내용은 아래 Table 4와 같고 승강기 부품의 인증방식에 따른 구분 내용은 아래 Table 5와 같다.

Table 4. Contents of escalator type test and engineering test under ASME A. 17.1, Section 8.3.

Type Test	Engineering Test	ASME A.17.1
Escalator Brake		Sec.8.3.6
	Step and Pallet	Sec.8.3.11

Table 5. Contents of elevator type test and engineering test under ASME A. 17.1, Section 8.3.

Type Test	Engineering Test	ASME A.17.1
Car and Counterweight Oil Buffers		Sec.8.3.2
Interlocks, Combination Mechanical Locks & Electric Contacts, & Door or Gate Electric Contacts		Sec.8.3.3
Entrance Fire		Sec.8.3.4
Hydraulic Control Valves		Sec.8.3.5
	Vertical Burn	Sec.8.3.7
	Room Fire Growth Contribution of Textile Wall Covering	Sec.8.3.8
	Hydraulic Overspeed Valves	Sec.8.3.9
	Safety Nut & Speed Limiting Devices of Screw-Column Elevators	Sec.8.3.10
	Suspension-Member	Sec.8.3.12

4. 미국 주요 지역의 승강기 인증 · 검사제도 운용

사례: 뉴욕시의 경우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 지역마다 법제의 독자성이 다르게 부각되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일단 승강기 설치의 역사 및 보유 대수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뉴욕시의 경우를 소개하기로 한다. 뉴욕시의 경우 1857년부터 시작해서 150여 년이 넘는 승강기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미국 전체 보유 승강기 수의 12%가 설치되어 있고 하나의 승강기가 하루 평균 500회의 운영을 함으로써 시 전체에 걸쳐서는 하루 약 3,000만회의 운영이 이뤄진다고 한다⁹⁾.

4.1 승강기 안전관리 규범 준거

뉴욕시 소재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 규정으로 2014년판 뉴욕시 건축법전(New York City Construction Code 2014)과 뉴욕시 규정(RCN, the Rules of the City of New York)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뉴욕시 건축법전 Chapter 30은 승강기 및 컨베잉 시스템에 대해 규정하면서 미국 기계기술자협회의 ASME A.17 시리즈들을 부록 등에 수정하여 채택하고 있다. 2014년판 뉴욕시 건축법전 Chapter30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

- Section BC3001 일반
- Section BC3002 승강구 인클로저
- Section BC3003 비상 작동
- Section BC3004 승강기 환기구
- Section BC3005 컨베잉 시스템
- Section BC3006 기계실
- Section BC3007 소방서비스 진입 승강기
- Section BC3008 거주자 탈출 승강기
- Section BC3009 서비스 설비 증서
- Section BC3010 승강기, 놀이기구 및 타 장치 가동자
- Section BC3011 운행중, 수리중, 검사 또는 테스트 중 승강기
- Section BC3012 사고
- Section BC3013 기존 장치
- Section BC3014 검사 및 테스트

뉴욕시의 승강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은 승강기 이해당사자 그룹과 단체(조직), 협회 및 시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규정 개정 위원회(code revision committee)가 전담하는데 동 위원회는 합의제 형태의 절차를 경유하여 규정 심사 및 개정을 위한 최종결정을 도출하며 복수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및 권고위원회(Advisory committees)와 하나의 운영위원회(Managing committee) 로 세분화된다¹¹⁾.

4.2. 승강기 안전검사의 유형

뉴욕시의 승강기 검사 유형은 아래 Table 6의 내용과 같다. 여기서 의미하는 검사(inspection)에는 승강기 부품에 대한 시각적 관정(visual examination)을 포함하고 시험(test)은 부품들이 그들의 정해진 조건을 확인(ascertain)·충족시키며 실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면 우리식 관점에서 검사와 인증을 분리시키면서 부품인증 또는 기기인증이라 세분화하여 명명하는 부분을 뉴욕시에서는 아예 검사라한 단계로 포함시켜 파악한다고도 볼 수 있다.

Table 6. Contents of elevator inspection in New York City

Inspection Type	Contents
Plan Review	- Verify new installations, alterations, modifications conform to code
Acceptance Inspection	- Inspection by approved agency inspector - Expedited Inspection for handicap and elderly
Periodic Inspection	- Run at least one inspection per year periodically
Category 1 Inspection	- Regular test per year - Inspection by approved third party and witness - Require report filing and perform corrective actions
Category 3 Inspection	- Extensive test for water hydraulic elevators by every 3 years - Inspection by approved third party and witness - Require report filing and perform corrective actions
Category 5 Inspection	- Extensive test by every 5 years - Inspection by approved third party and witness - Require report filing and perform corrective actions
Complaint Inspection	- Receive complaints through NYC 311 call center
Audit Inspection/ Quality Assurance Inspection	- Run inspection on already completed jobs and CAT1/CAT5 inspections
Survey Inspection	- Confirm devices function with code conformance
Violation Re-Inspection	- Re-inspect when code violation occurs
Etc.	- Amusement Ride Inspection - Personnel Hoist Inspection

5. 시사점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승강기 인증·검사 체계는 법제의 특성상 민간의 기준을 주, 시 등에서 채택하여 사용하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취하므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적절히 섞인 상태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승강기 인증단계와 검사단계에 관여하는 법령들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고 따라서 관여하는 정부기관도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는 승강기 인증 및 검사의 기본적 규율 내용에 대해 대부분 ASME A.17 규정 시리즈를 모태로 하여 이를 각 지역별 법제도에 편입시키기 위해 맞춤형으로 수정하여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민간 영역에서 정립한 승강기 인증·검사체계 관련 규범에 대해 강제적·일률적 간섭을 자제하고 각 지방 정부가 일단 공식적으로 채택하면 채택한 규범이 자율성을 갖고 작동함을 원칙으로 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관리·감독 면에 있어서는 각 지역 정부가 면허 내지 승인제도를 통해 직접 민간영역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완전한 자율 내지 방임으로 흐르지 않게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앞서 뉴욕시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해당 지역의 승강기 이해당사자 그룹, 단체, 협회 및 지역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규정 개정 위원회(code revision committee)가 합의제 절차의 경우를 통해 지역에 특유한 관행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범 내용의 수정·추가 작업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규범이 적용될 지역의 현황 및 시기상의 탄력적 사정 변경을 고려한 조치를 계속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지역, 지금 시기에 바로 적용되는 규범이다 식의 선언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규범 운용상의 혼선을 방지하면서 명료한 적용을 도모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승강기 인증·검사분야에 있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제가 명백히 분리되어 있고 승강기 부품 인증과 승강기 기기 자체의 인증도 일단 분리되어 있으며 안전검사의 기준마저 각기 따로 적용될 여지가 많은 현실에 처해 있다. 이 경우 부품단위 인증기준에 누락된 부분이 검사단계에서 새롭게 등장한다면 인증·검사체계가 예측가능성을 흠결한 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비효율을 양산하게 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승강기 기기 인증이 된 경우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게 되면 승강기 안전검사제도의 별도 존립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대두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미국의 ASME A. 17.1 이 동일 규범 내에서 인증, 검사 등이 일응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때로는 인증, 검사의 개념조차 혼용해서 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규범적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나름의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

각한다. 또한 이들의 법문화 및 법제도 운용이 늘 그러하듯 실제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등, 각종 계도성 지원(outreach)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보다 실제적·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도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행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이를 주로 관장하게 되는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 내지 영역 다툼식의 접근보다는 기존의 현장 실무를 담당해 온 영역들을 보존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온 민간영역을 훼손시키지 않는 안, 즉,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상생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정부 부처가 전권을 행사하며 일방적·하향식 규제일변도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던 과거의 모습들에 대한 세간의 전방위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역적 관행과 자율을 간과하지 않되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중앙제어가 반드시 가능한 규범모델의 정립이 우리도 시급하며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미국적 모델 역시 하나의 중요한 참조자료로 우리식 윤색 내지 변용을 시도한다면 분명히 가치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실제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률의 저하 및 국민들의 승강기 안심 이용의 유도를 제도 개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우선 관련 규범의 개선을 통해 우리의 현행 승강기 인증·검사체계에 대한 난마와 같이 얽힌 여러 이해관계들의 대립부터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장과 실무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탁상공론을 탈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의 경유를 통해 국민 안전의 최종적 목표를 보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사구시(實事求是)식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References

- 1) http://www.koelsa.or.kr/wpge/m_118/info/info010101.do; http://www.koelsa.or.kr/wpge/m_140/info/info020201.do
- 2) http://www.koelsa.or.kr/wpge/m_143/info/info020204.do
- 3) Y. J. Kim,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United States of America”,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p.37-38, 2015.
- 4) <https://www.asme.org/shop/certification-accreditation>
- 5) <https://www.asme.org/products/codes-standards/a171csa-b44-2016-safety-code-elevators-escalators>
- 6) <http://www.ul.com/aboutul/history/>
- 7) <https://www.osha.gov/dts/otpca/nrtl/nrtllist.html>
- 8) ANSI, “Overview of the U.S. Standardization System: 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Activities, 3rd ed., pp.4-6, 2010
- 9) C. Singh and H. Vyas, “Elevators: Fall Hazards and Mechanics”, 2015 “Build safe, Live safe” conference, p.50, 2015.
- 10) http://www1.nyc.gov/assets/buildings/apps/pdf_viewer/viewer.html?file=2014CC_BC_Appendix_K_Elevators_%26_Conveying_Systems.pdf§ion=conscode_2014
- 11) <http://www1.nyc.gov/site/buildings/codes/committees.page>